

전주지방법원 2016. 11. 17 선고 2016가단1462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11. 17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,

가.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, 3, 10, 11, 12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
슬레이트목조창고 52㎡, 같은 도면 표시 13, 14, 15, 16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

(나)부분 샌드위치판넬창고 14㎡, 같은 도면 표시 17, 4, 18,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

(다)부분 시멘트블록조주택 1㎡을 각 철거하고, 위 (가), (나), (다) 부분 토지 67㎡'를 인도하며,

나. 600,930원과 2016. 9. 8.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10,7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오승이

별지